

#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 처분 취소

- 대법원 1998. 6. 23. 98두4139
- 원심판결 : 서울고등법원 1998. 1. 16.  
선고 97구12206 판결
- 주 문 :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## 판시사항

직원들간의 바다낚시 행사를 사적인 친목 행사로 판단하여 행사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

## 판결요지

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,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,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, 목적, 내용, 참가인원, 강제성 여부, 운영방법 및 비용부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,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.

## 판결이유

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,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,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, 목적, 내용, 참가인원, 강제성 여부, 운영방법 및 비용부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,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(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누11107 판결, 1997. 8. 29.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).

원심은, 한국전기통신공사 중앙연수원 전 송기술학부 교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서○○이 1993. 10. 9. 토요일에 전송기술학부 소속 직원 7명과 위도에 바다낚시를 갔다가 그 이튿날인 10. 10:00경 위도-격포 간의 서해 페리호에 승선하여 돌아오던 중 배가 격포 앞바다에 침몰하여 사망하였으나, 위 바다낚시 행사는 사전에 상부에 보고된 바도 없고, 경비도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이 부담하였으며,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은 매월 토요일 중 하루를 휴일로 하는 제도에 따라 그 날을 휴일로 신청하고 참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, 위 행사는 전송기술학부 직원들의 사적인 친목행사에 불과할 뿐이므로 서○○이 업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.

관계증거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,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.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 **법원**